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성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039

발의연월일: 2024. 10. 30.

발 의 자:이성윤·정동영·조인철

윤준병 • 양부남 • 한준호

전현희 • 박희승 • 김문수

이재강 · 안호영 의원

의원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혁신도시로 인재를 유입시키기 위하여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도입하여 이전지역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이전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타지역 대학을 졸업하였거 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며, 이전지역 소재 대 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경우는 이전지역에서 학업을 수행했음에도 이전지역인재에 포함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또한, 이전지역인재 채용의무 비율을 법에서 50% 이상으로 명시하고 이전지역인재 채용이 채용비율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이를 이전지역 외 지방대학원 또는 지방대학 졸업자로 충원할 필요성이 제기됨.

한편,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 재화·서비스 우선구매를 의무화하

는 등 지역발전 기여를 촉진하고, 기여 실적에 따라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이전지역인재에 이전지역 소재 대학원 졸업 및 수료자를 추가하며, 채용의무 비율을 50% 이상으로 정하고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채용의무 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이만큼 이전지역 고등학교 출신 타지역 지방대학원 또는 지방대학 졸업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하는 한편,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발전 기여 추진실적에 따라 포상 및 조세감면 · 보조금 등을 제공하고,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 재화 및 서비스 우선구매 의무화를 통하여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개선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에 대한 기여를 촉진함으로써 이전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29조의2, 제29조의3 및 제29조의5).

법률 제 호
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9조의2제1항 본문 중 "지방대학"을 "지방대학원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「고등교육법」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원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지방대학"으로, "말한다)"를 "말한다. 이하 같다)"로, "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"을 "졸업(수료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였거나 졸업예정인"으로, "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규모,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"를 "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50 이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전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채용의무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이전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지방대학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하였거나졸업예정인 사람을 채용의무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이 될 때까지 채용할 수 있다.

제29조의3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이 우수한 이전공공기

관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고려하여 이전공공 기관등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을 하거나 보 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29조의5제1항 중 "해당"을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해당"으로, "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"를 "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구매 증대를"을 "우선 구매를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전공공기관등의 이전지역인재등 채용에 관한 적용례) 제29조의 2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규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의2(이전공공기관등의 지	제29조의2(이전공공기관등의 지
역인재 채용 등) ① 이전공공	역인재 채용 등) ①
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	
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	
정하는 공공기관(이하"이전공	
공기관등"이라 한다)의 장은	
해당 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	
한 지역(이하 "이전지역"이라	
한다)에 소재하는 <u>지방대학</u>	<u>지방대학</u>
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	원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
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	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
지역에 있는 「고등교육법」	지역에 있는 「고등교육법」
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<u>말</u>	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원
<u>한다)</u> 또는 고등학교(「초·중	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지방
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	대학
고등학교・고등기술학교를 말	
한다. 이하 같다)를 <u>졸업하였거</u>	
<u>나 졸업예정인</u> 사람을 <u>이전공</u>	
공기관등의 채용규모, 이전지역	<u>말한다. 이하 같다)</u>
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	
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	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	
여야 한다. 다만, 이전지역에서	졸업(수료를 포함한다. 이하 같

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 역에서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 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② ~ ⑥ (생 략) <u><신</u> 설>

제29조의3(이전공공기관의 지역 제29조의3(이전공공기관의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) ① ~ ④ (생 략)

<신 설>

다)하였거나 졸업예정인	_
<u>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5</u>	(
이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=
범위에서	-
	-
	_
	_
	_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전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채 용의무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한 후 이전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지방대학원 또는 지방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 인 사람을 채용의무 비율에 해 당하는 인원이 될 때까지 채용 할 수 있다.

발전에 대한 기여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이 우수한 이전 공공기관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<신 설>

제29조의5(이전공공기관의 우선 저구매)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 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이전 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<u>구매 증대를</u> 위한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,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.

③ (생 략)

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
따른 추진실적을 고려하여 이
전공공기관등에 대하여 세법에
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
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
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세29조의5(이전공공기관의 우선
구매) ①
<u>대통령령으</u>
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해당
서비스를 우선적으로
<u>구매하여야</u>
②
<u>우선 구매를</u>
③ (현행과 같음)

수 있다.